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28호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
- 다. 협의회 지도·감독 관련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부.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